

이야기문화연구소 규정

(제정 2018. 9. 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전주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부설 이야기문화연구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도전적, 선제적, 진취적 인문학 연구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트랜스컬처·한문화 스토리텔링·디지털인문학과 인문공학 분야의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이야기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분) 연구소는 본교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특화연구소로 구분한다.

제4조(위치)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5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적인 학술 콜로키움 개최
2. 인문학 분야 학술·연구활동
3. 국내·외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4. 국가, 지자체 및 기업과 연구 및 산학협력 과제 수주
5. 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과 임원

제6조(조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1인
2. 간사: 1인
3. 감사: 2인 이내
4. 연구원
5. 연구인력: 약간 명
6. 연구소지원인력: 약간 명
7. 운영위원: 5인 이내

제7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연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국책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임기를 사업 종료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는 교원은 본교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별지 1]의 가입신청서를 연구소에 제출해야 하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을 승인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간사) ① 간사 및 감사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②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총무 업무를 담당한다.

③ 간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인력) ① 연구인력은 연구원과 협력하여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용역사업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연구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교수
2. 박사후연구원
3. 특별연구원
4. 연구조원
5. 연구보조원

제11조(연구소지원인력) ① 연구소는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조교 등의 연구소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지원인력은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제12조(협력연구원) ① 협력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의 전임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협력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협력연구원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및 사업을 공동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서) ①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연구부서를 두며, 필요시 별도의 전문연구소를 둘 수 있다.

1. 기획부: 아젠다 발굴, 연구프로젝트 기획
2. 교육부: 세미나, 콜로키엄, 학술대회 개최
3. 협력부: 연구인력 네트워크구축

② 연구부서에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속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연구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서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전문연구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 7.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소집) ①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소속 연구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위원 2인 이상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4장 재정

제1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지원금, 연구간접비, 연구소 사업에 의한 수입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 연구소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연구소장이 행하고,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제5장 감사

제19조(감사) 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구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직후 1개월 내에 연구소 사업 및 회계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결과는 문건으로 작성하여 연구소 간행물 등에 공표하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